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5-311호

「금융위원회운영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위원회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금융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단순 행정절차 사항 등을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기존 위임사항의 자구 수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해당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관련 사항(안 별표 45.)

- 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 발행 등 “승인·거부 등” 의 업무*는 이미 위원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나, 그 중간과정인 “검토”가 위임되어 있지 않아 위임토록 보완

*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등록·변경등록 및 기초자산집합 감시인 선임

나. 신용정보업 감독관련 사항(안 별표 4.)

- 신용조회회사는 공공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 조사·분석

업무의 겸업을 위해 금융위의 승인이 필요하나, 의뢰기관(공공기관으로 한정) 및 업무범위의 제한(공공목적 조사로 제한)에 따라 정책적 판단의 여지가 크지 않아 위임 가능

다.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자의 등록 등 승인(안 별표22-3)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이 신설됨에 따라 등록·폐지 등 단순 업무사항을 타 금융투자업과 유사하게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등록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창업·중소기업의 자금지원 강화

라. 기타 경미한 사항(안 별표1, 별표6, 별표11)

- 종합금융회사의 지점 설치 및 감독원장 위탁업무 처리결과 보고 등 기타 경미한 사항의 위임 및 자구 수정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화: 02-2156-9634, 팩스: 02-2156-9929, 이메일: council0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변경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